(재)평택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6 - 59호

평택시청소년재단 PYEONGTAEK YOUTH FOUNDATION

- 2026년 제6회 청소년재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재)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직종(직급)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조건
공개 경쟁	기간제 근로자	보호상담원 (청소년쉼터 야간지도)	2명	입소 청소년의 야간 생활지도 및 정서·안전 관리, 위기상황 대응 및 사례관리 지원, 상담활동 보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임용예정일로부터 ~2026.12.31.까지 *연도별 갱신 가능, 만60세까지

※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 모든 직종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응시자는 모집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 불가**
2)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함**(직무기술서 참조)**
3) 응시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편견요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임용되며 결격사유 발생,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시용평가 후 최종임용,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5)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취업규칙 제24조(배치전환)에 의거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음

2 응시자 결격사유 및 공통자격 기준

<table>
<tr><th>구분</th><th>내용(채용공고일 기준)</th></tr>
<tr><td>공통
자격</td><td>
가. 결격사유 : 재단인사관리규정 제8조 및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간제 결격사유] 평택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2019.3.28.>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삭제 2019.3.2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현재로 한다.

나.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966년 이후 출생자
</td></tr>
</table>

구분	내용(채용공고일 기준)
기간제 자격 (쉼터)	○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름 - 적용대상 : 기간제 야간지도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9조(임원의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 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명: 2026년 제6회 청소년재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 기간제 채용자격 기준

※채용공고일 기준 / 경력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상근근무 기준

구분	채용분야	자격 기준	비고
기간제	보호상담원(청소년쉼터 야간지도)	**[기간제 : 보호상담원 /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 ①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②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⑥「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⑦ 그 밖에 ①부터 ⑥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각 호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청소년쉼터 종사자 해당자격·분야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본 채용은「남자단기청소년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별·직무별 자격요건을 별도로 적용함			

[참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 보수 및 근로조건 <채용명: 2026년 제6회 청소년재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 복무조건 : 평택시청소년재단 규정·규칙 및 근로기준법 적용

- 평택시청소년재단 내부규정에 의해 정년 만60세 적용

□ 근로조건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으로 퇴직연금 가입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직종(직급)	채용분야	근무시간	근무장소
기간제 근로자	보호상담원 (청소년쉼터 야간지도)	1일 8시간, 주 32~4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 운영 계획 및 근무 편성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정함. 교대근무 편성에 따라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청소년 입소시설(24시간) 특성상 주말 및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하며, 근무계획에 따라 중도변경 가능**	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재단직원의 근무주기는 아래와 같으며, 직종 및 업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① 월~금 근무제, ② 화~토 근무제, ③ 고정업무·사업 특성에 따른 특정근무 요일·시간)			

□ 보수조건

구분	연간보수액 (기본보수) *12개월 기준	제수당			복지포인트	성과급
		보조비	명절휴가비	근무수당		
기간제 근로자	월 2,426천원 (주40시간 기준)	○ 26년도 평택시생활임금제적용(시간당 11,610원) ※시간외 · 휴일근무시 대체휴무 ※보호상담원(청소년쉼터 야간지도)의 경우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산정 지급하며 야간근로 가산 등 예산범위 내 수당 지급				
1) 시용기간 적용 : 신규 채용자 경력 무관 3개월 적용, 시용평가 후 최종임용 ※ 시용기간 동안 보수 미삭감, 업무적응 교육, 중간평가, 만료 전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최종) 진행 2) 초임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확정 경우 재단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 직무급 공무직의 경우 운영사업의 방침·지침에 따라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호봉 인정 (사업방침에 따른 경력인정 시 재단 보수규정내 해당 호봉수준 월 기본보수 책정)**						

5 전형 절차 및 심사 기준 <채용명: 2026년 제6회 청소년재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 직종(직급)별 채용전형 절차

구 분	채용 절차	기간제
1차 전형	1 서류심사(적격여부)	☑
2차 전형	2 필기시험(인적성 검사)	**비대상**
3차 전형	3 면접시험(대면·구술)	☑
합격 후	4 신원조회(범죄전력 조회) (자격증 및 경력증명 진위·원본 확인)	☑
	5 임용등록 (주민등록·가족관계·학위·신체·병역)	**비대상**

□ 전형별 심사기준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안내 예정

채용 전형	심사 기준
1차 전형 (서류심사)	▪ 일 자 : 2026. 11. 3.(화) ▪ 대 상 자 : 응시자(응시원서 제출) 전원 ▪ 응시자 제출자료의 적정성 · 응시자격요건 등 적합여부 심사 ▪ 서류심사 위원 구성, 자격기준 대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2차 전형 (필기시험)	▪ 기간제 비대상
3차 전형 (면접시험)	▪ 일 자 : 2026. 11. 18.(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3층 다모임실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비대상 응시자 전원(면접대상) ▪ 심사기준 : 총 100점 만점(5개 평가항목 배점 20점) 1. 해당분야의 이해와 경험 및 경력사항 2. 전문지식과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3. 직원으로서의 자세(협동성, 인내성, 활동성 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 품행 및 성실성

채용 전형	심사 기준
	■ 합격기준 • 면접시험 결과 평균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임용 • 평균점수는 면접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되, **면접위원이 3인일 경우 3인의 평균 점수**로 결정함 •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 할 수 있음 • 최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순위를 결정하며, 채용분야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모집인원 5명 이하 : 1명이내, 6명~10명 이하 2명 이내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하며 - 최종합격자가 기간내 임용을 포기 한 경우 명단의 순서에 따라 추가임용함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 ②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점수를 받은 자 → ③ 면접시험 평정요소(평가항목 1~5번 순) 중 상위점수를 받은 자 순으로 결정함 - 동점 여부는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반영 후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채용 일정

※기재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

구 분	일 자	주요내용
채용 재공고	2026. 10. 27.(화) ~ 11. 2.(월)	평택시 및 재단 홈페이지
1차 전형 결과발표 (서류심사·필기시험 대상)	2026. 11. 4.(수)	재단 홈페이지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2026. 11. 10.(화)	기간제 비대상
2차 전형 결과발표 (면접대상자)	2026. 11. 13.(금)	재단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6. 11. 18.(수)	대면·구술평가 (청소년문화센터, 평남로 616)
3차 전형 결과발표 (면접합격자)	2026. 11. 20.(금)	재단 홈페이지
임용등록공고	2026. 11. 20.(금)	재단 홈페이지
임용등록기간	2026. 11. 23.(월) ~ 25.(수)	인사부서 방문 등록, 기간제 비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6.(목)	재단 홈페이지
임용예정	2026. 12. 1.(화)	기간제 직원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근무 가능일 즉시 근무

6 참고 사항 : 가산점

□ 가산 대상

<table>
<tr><th>구 분</th><th>우대사항(가산비율 등)</th><th>확인방법</th><th>비고</th></tr>
<tr><td rowspan="2">취업지원
대상자
(보훈)</td><td>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10%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의 경우 미해당</td><td>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td><td rowspan="4">합격기준을
통과 할 경우
적용</td></tr>
<tr><td colspan="2">○「국가유공자법」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독립유공자법」제16조(취업지원)
○「5.18유공자법」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법」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보훈보상자법」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법」제7조의9(취업지원)</td></tr>
<tr><td rowspan="2">장애인</td><td>전형 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 전형의 경우 미해당</td><td>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각 1부.</td></tr>
<tr><td colspan="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1항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td></tr>
</table>

□ 우대사항 적용 범위 : 면접 심사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가산비율</th><th>적용범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취업지원
대상</td><td>취업지원대상자</td><td rowspan="2">5~10%</td><td rowspan="2">원점수로 합격자 선정 이후
순위에 가점 반영</td><td rowspan="2">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td></tr>
<tr><td>취업지원가족</td></tr>
<tr><td colspan="2">장애인 가산대상</td><td>5%</td></tr>
<tr><td colspan="5">※ 1)서류심사 적격여부, 2)필기검사 통과여부 전형으로 3)면접심사 가점만 적용되며, 가점 합격자는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 수가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초과 가능)</td></tr>
</table>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기준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1번 가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 준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채용 공고

구분	주요 내용
기간	○ 2026. 10. 27.(화) ~ 11. 2.(월)
장소	○ 평택시청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클린아이잡플러스, 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원서 접수

구분	주요 내용
기간	○ **2026. 10. 27.(화) ~ 11. 2.(월) ※ 응시자 기한엄수**
접수 장소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영기획실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94, 지하1층 경영기획실
접수 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도착여부 응시자 확인필수) - 등기우편 외 택배 등의 방법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방문 :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 방문 접수분에 한함(응시자 본인만 접수가능)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00~12:00, 오후 14: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구분	제출서류(각 1부)	제출대상
원서 접수 시	1. 응시원서(붙임양식)	공통
	2. 자기소개서(붙임양식)	공통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양식)	공통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양식)	희망자

구분	제출서류(각 1부)	제출대상
면접 심사 시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붙임양식)	공통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양식)	공통
	7.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학력, 경력 등 증명 사본** ① 응시자격이 자격증 기준인 경우 :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당해 자격연수 예정 합격확인서 가능 ② 응시자격이 경력 기준인 경우 : 해당 경력·재직증명서(공고 3개월 이내) **◎ 응시자격 요건 증빙** - 모집 분야와 관련 없는 명시되지 아니한 서류 제출 금지 - 자격·경력증명 미제출 또는 불일치 시 자격 미충족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임용자격 요건과 관련된 자격증빙은 면접심사 현장 등록 과정에서 필히 확인용 원본을 지참하여 증빙 대조하고 사본을 제출** (허위제출 확인 시 합격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 자격증 기준 증명**(해당분야 '제시요건'급 자격 이상) - 자격취득일 및 자격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유효한 증명이어야 함 - 공고일 3개월 이내 발급,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경과 시 인정 불가 ※ 해당분야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예정자 허용(단, 자격 미취득 시 임용취소) **◎ 경력 기준 증명**(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증명)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반드시 담당업무·근무기간·발급기관 직인 등 증빙효력이 충분하여야 함 - 공고상의 응시요건 동일 직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기재 불분명 인정 불가 ※필요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사실관계 확인 가능 - 동일 기간 중복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확인되는 경력상 채용분야와 동일한 직무의 경력기간만 인정(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인정불가)	해당자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서	공통
	9.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 발행분) ※ 면접시험 가점	해당자

안내 채용관련 주요 안내사항

○ 본 채용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전형 단계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사항은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특정근무 이력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기재하시기 바람.

○ 응시자격 및 평가요소는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와 관련한 서류 및 면접전형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락불능, 전형발표 미확인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허위기재, 누락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서류심사시 탈락 요인입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부적정 작성 등)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예비합격자의 채용은 가변적이며 명시적 채용의사의 표시는 아님

○ 응시자는 모든 평가단계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대리응시, 허위서류 제출, 시험 중 부정행위 등)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임용 후라도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은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5년간 채용 응시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임용됩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청구 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첨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pyf01708@pyf.or.kr로 제출

※ 채용서류 반환 시 '반송불요'로 발송되며, 미수령 시 우체국에서 폐기됩니다.

○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첨부 직원 공개채용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pyf01708@pyf.or.kr로 제출

○ 반환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를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 전형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평택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담당자(☎ 031-610-453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직무설명서 ····· 붙임 1
2. 응시원서 ····· 붙임 2
3. 자기소개서 ····· 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붙임 4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신청서 ····· 붙임 5
6. 응시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 붙임 6